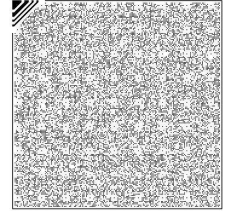
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('20.2.24~)와 관련하여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국민건강에 필수적이지 않는 의약품 오남용 사례 발생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 시정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.
3. 이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「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」을 마련하였사오니, 일선 기관·소속 지부 및 회원들에게 즉시 전파되어 동 방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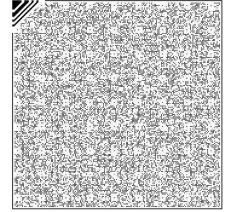
< 주요 내용 >

-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('20.2.24~)하여, '21.11.2일부터 마약류*, 오남용 우려 의약품** 처방 제한

* 마약류 : 「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2항,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·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

** 오남용 우려 의약품 : 「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) 지정 품목(23개 품목(성분) 함유제제)

- 붙임 1.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 의약품의 처방 제한 방안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-780호).
2. (참고)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. 끝.

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17개 시도지사장, 전국 보건소장, 6개 보건의약단체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(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)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(급여관리실), 13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

주무관 **한수원** 서기관 **이준미** 보건의료정책과전결 2021. 10. 19.
장 **김국일**

협조자

시행 보건의료정책과-5056 (2021. 10. 19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 10동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415 팩스번호 044-202-3941 / hansw24@korea.kr 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